

☐ 법적근거

법률 제4419(91. 12. 14)공포 : 광역소방체제로 전환

부천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

부천시화재예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천시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

의안번호	244
의결 년 월 일	93. 12. 24 (제25회)

제출년월일 : 1993. 12. .

제 출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회

☐ 제안이유

- 제해 또는 기타 사유로 전량된 농가에 한하여 식량을 대여하고자 73. 7. 1. 사환곡관리조례를 제정하였으나,
- 현재 양곡관리법 제6조의 2 규정에 근거하여 국비로 양곡 대여토록 추진하고 있어 부천시사환곡관리조례를 폐지하여 업무의 일원화를 기하고자 함.

☐ 주요급자

- 시행일 :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

☐ 법적근거

양곡관리법 제6조의 2

부천시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

부천시사환곡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